

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22. 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차후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 위원 중 “농축산과장”을 “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”으로 변경(안 제6조)
- 나.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 간사 “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”를 “여성농업인 업무 담당팀장”으로 변경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2. 02. 10. ~ 2022. 03. 0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 중 “**농축산과장**”을 “**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**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**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로**”를 “**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농업기술센터소장, <u>농축산과장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7조(회의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로</u>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6조(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회의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u>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</u> 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
연락처	(033) 330 - 1306